

韓國環境法學會 10 年

具 然 昌*

I. 머리말

環境法에 관심을 가져왔던 법학계의 몇 분들이 종로 안국동에 있는 대중음식점 ‘京鄉’에 모이셔서 韓國에서의 環境法研究의 조직화와 활성화를 논의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다. 처음 學會를 만들려고 논의를 시작하였을 때 모이셨던 분들이 열성스러움과 조심성스러움이 새삼 생각키워진다. 모임의 명칭을 ‘學會’ 혹은 ‘研究會’로 할 것인지를 신중히 논의했던 점은 특히 기억되는 일이었다. 學會의 濫設과 유명무실한 學會의 존재를 걱정해서였다.

지극히 산발적이고 소극적이었던 環境法研究가 環境法學會의 창립 이래 활성화되고 조직화되어 우리 나라 環境法學의 발전에는 물론 정부의 환경법과 정책 및 행정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국가경제의 현저한 신장과 함께 열악했던 우리의 環境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환경과학분야에 있어서는 현저한 발

* 本學會 常任理事

전과 활성화의 기운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環境法學會는 오히려 창립 당시보다도 그 열기가 식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스러움이 없지 않다.

1986년 이래의 국제수지의 흑자화, 국민의 환경의식의 향상, 그리고 정부의 환경정책의 적극화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전문적인 環境法學會의 활약과 기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環境法學會의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과거 10년을 평가해 봄과 아울러 우리 學會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진로를 재정립할 계기를 가져보는 것도 의의있다 하겠다.

II. 學會의 創立

우리 나라의 環境法研究와 관련하여 가장 팔복할 만한 事實은 1977년 12월에 있었던 韓國環境法學會의 創立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산발적이었던 우리나라 環境法에 관한 研究를 組織化·積極化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韓國環境法學會의 創立趣旨 및 그 經過를 概觀해 본다.

(1) 創立準備

우리 나라의 급속한 經濟發展이 불고 온 公害 내지 環境問題와 관련하여 최근 環境法에 관한 研究가 비록 組織的인 것은 아니었지만, 각 分野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展開되어 왔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산발적인 環境法研究를 組織化하는 것이 앞으로의 公害 내지 環境對策을 위해서 필요하고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7年부터이었고, 그 해 말에 가서야 結實을 보았다.

즉, 環境法分野에 관심을 가진 李尚圭(中央教育研究院 院長)·徐元宇(서울大)·金哲洙(서울大)·梁承斗(延世大)·金東正(辨護士)·具然昌

(慶熙大) 등 몇몇 在京學者가 非公式的인 접촉을 통하여 環境法에 관하여 體系的으로 調査·研究하고, 또한 특히 積極的인 活動을 펼 수 있는 學會를 조속한 時日내에 結成할 것에 뜻을 모우고, 1977年 11月 18日과 11月 25일의 두 차례의 會合을 가졌다. 거기서 學會組織의 大綱과 會則草案을 마련하고 우선 環境法의 각 分野에 관심을 가진 學界와 法曹界 및 官界의 15名内外의 京鄉의 人士를 초청하여, 1977年 12月 7日 學會의 發起總會를 열 것을 결정하였다.

(2) 創立趣旨

우리 나라의 環境問題가 날로 深刻化·多樣化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政府는 環境保全法을 새로이 制定하는 등 적극적인 公害防止 내지 環境保全對策을樹立·推進하려는 意志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環境保全對策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環境規制나 被害救濟에 관하여는 적잖은 法律的·行政的인 문제점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다른 學問分野와의 學際의 協同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環境法領域의 發展이 강력히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간의 環境에 관한 研究가 워낙 日淺하고 그나마도 非組織的·非繼續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環境法學은 이러한 要請에 副應할 수 없는 事情이었다.

우리의 事情이 이러한 때문에 環境法學의 發展에 대한 要請은 날로 高調되어 왔다. 이러한 要請에 副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環境法研究를 組織化하고 繼續化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環境法研究에 관심을 가진 學者, 行政實務家, 法曹人們의 共同의 對話와 研究의 터전을 만들어 미력이나마 韓國環境法學의 發展에 寄與하고자 韓國環境學會를 創立하기에 이른 것이다.

(3) 發起總會

1977年 12月 7일의 發起總會는 서울 乙支路 六街 「스칸디나비안」

법」에서 열렸는데, 李尚圭·徐元宇·金哲洙·梁承斗·金東正·具然昌·金南辰(慶熙大)·權龍雨(檀國大)·李均成(韓國外大)·金洪奎(成均館大)鄭萬朝(서울高法判事)·朴銑忻(法制處企劃管理官)·張仁錫(法制處專門委員) 등 諸氏가 참석하였다. 다만, 1978 年 學會事業費의 確保를 위하여 設立節次를 급히 서둘러야 했던 不得已한 사정으로 地方에 계신 분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은 遺憾스러운 일이였다.

이 發起總會에서, 學會의 名稱을 「韓國環境法學會」로 결정하고, 學會의 事務所는 韓國法學院 내에 두기로 함으로써 韓國法學院 산하의 學會의 하나로 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會則을 審議하여 採擇하였으며, 任員選任에 관하여는 會長에 李尚圭 院長, 副會長에 徐元宇 教수와 金洪奎 教수를 선출하고, 그 밖의 任員(常任理事·監事·幹事)은 會長團에 그 選出을 일임하였다.

(4) 任員의 選出

會長團은 1977 年 12 月 21 日에 모임을 갖고 會長團에 委任된 나머지 任員을 선출하였다. 常任理事에 金鍾源(成均館大), 金哲洙(서울대), 具然昌(慶熙大) 교수를, 監事에 金東正 변호사, 全昌祚(東亞大) 교수를, 그리고 幹事에는 具然昌 교수와 李均成(外大) 교수를 각각 선임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理事에는 權龍雨(檀國大), 權泰俊(서울大 環境大學院), 金基洙(漢陽大), 金南辰(慶熙大), 金元主(慶北大), 金伊烈(中央大), 金燦奎(慶熙大), 盧隆熙(서울대 環境大學院), 梁承斗(延世大), 吳錫洛 辯護士, 李範燦(成均大), 鄭權燮(釜山大), 鄭萬朝(서울高法) 판사, 韓昌奎(成均大) 교수를 선임하였다.

아울러 會則 제 8 조에 의한 顧問으로 文鴻柱 교수(成均館大 : 韓國公法學會 會長)와 金曾漢 교수(서울大 : 韓國民事法學會 會長) 및 徐燦玗 교수(國民大 : 韓國法學教授會 會長)를 추대하고, 또 保健社會部長官과 建設部長官은 當然職顧問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年會費에 관하여는, 正會員 3,000 원, 理事 8,000 원, 常任理事 10,000 원, 副會長 15,000 원

및 會長 20,000 원으로 결정하였다.

III. 1978 年의 學會活動

學會는 創立初年度부터 본래 뜻한 바 積極的인 學會活動을 벌이기 위한 알찬 事業計劃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會長을 비롯한 常任任員陣이 그 事業基金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文教部의 1978 年度 政策課題研究助成費 및 심포지움補助費를 受領하게 되었다.

1978 年度의 學會活動을 간추려 보면, 文教部政策課題研究費에 의한 研究의 推進, 한 차례씩의 研究發表會와 심포지움, 學會誌의 發刊이 그 주된 것이 된다. 그리고 事業計劃의 樹立 및 推進을 위한 네 차례의 常任理事會가 있었다.

(1) 第 1 回 研究發表會

- ① 日時 : 1978 年 7 월 14 일
- ② 場所 : 스칸디나비안 클럽(서울 乙支路 六街)
- ③ 參席人員 : 21 명
- ④ 發表要旨 :

i) 李尙圭 : 「環境保全法의 問題點」

주로 立法技術 내지 方向에 대한 檢討를 하였다. 즉, ① 環境規制의 段階性의 不考慮, ② 복합적 規制方法·手段의 채택 필요, ③ 被害救濟 規定의 未備, ④ 環境規制의 만네리즘 방지를 위한 對策의 未備, ⑤ 費用負擔規定의 消極性 등이다.

ii) 具然昌 : 「公害判決의 檢討」

入手可能한 限度內의 우리 나라 公害判決의 리스트를 作成하고, 그 原文을 마련하였으며, 公害事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因果關係, 違法性, 過失에 관한 大法院判決에 대한 간단한 비평을 하고, 公害判例集의 發刊을 提議하였다.

(2) 第1回 심포지움

- ① 日時 : 1978년 10월 21일
- ② 場所 : 檀國大學校 音樂堂
- ③ 主題 : 環境保全과 法
- ④ 參席者 : 教授·法曹人 등 35명, 學生 40명
- ⑤ 會議進行

- i) 開會辭(李尚圭)
- ii) 座長(徐元宇, 金哲洙)
- iii) 主題發表 및 討論者

第1題 : 環境影響評價

發表者 : 鄭萬朝 討論者 : 權泰俊, 李勇雨

第2題 : 環境污染의 總量規制

發表者 : 金政炫 討論者 : 具然昌, 金東政

第3題 : 環境污染의 刑事責任

發表者 : 金鍾源 討論者 : 金東正, 金興東, 朴貞根

第4題 : 環境污染과 行政救濟

發表者 : 金南辰 討論者 : 權龍雨, 朴銑炘

第5題 : 環境污染의 私法的 救濟

發表者 : 金基洙 討論者 : 吳錫洛, 全昌祚, 鄭權燮

(위 主題發表者 論文은 모두 本學會誌 創刊號에 掲載되었음)

IV. 1979年의 學會活動

本學會는 新年初에 본래 뜻한 바 積極的인 學會活動을 벌리기 위한 1979年度의 事業計劃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會長을 비롯한 常任理事陣이 그 事業基金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文教部의 1979年度 政策課題研究助成費 및 심포지움 補助費를受領하게 되었다.

1979年度의 學會活動을 간추려보면, 文教部政策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의 推進, 學會誌인 「環境法研究」創刊號의 發刊, 두 차례의 研究發表會, 한 차례의 심포지움, 定期總會의 開催가 그 주된 것이 된다. 그리고 事業計劃의 樹立 및 推進을 위한 다섯 차례의 常任理事會가 있었다.

1979 年의 學會活動으로서 特記할 만한 것은 同年 5月 19 日 故 朴대 통령의 環境行政專擔部署의 설치지시에 따른 기구설치준비에 즐음하여, 본 학회는 6 월 23 일 환경행정기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구에 대한 學會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력한 것이었다.

(1) 文教部政策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1979 年度의 本學會 研究는 「環境汚害救濟制度의 確立을 위한 研究」를 그 主題로 확정하여 文教部政策課題研究助成費를 受領하였다. 위의 主題下에 다음과 같은 小課題로 나누어 研究擔當者를 선정하였다.

- ① 環境權斗 被害救濟(金哲洙)
- ② 行政訴訟斗 被害救濟(徐元宇)
- ③ 民事訴訟斗 被害救濟(吳錫洛)
- ④ 環境紛爭調停制度의 效率化(權龍雨)
- ⑤ 公害保險制度의 定立(李均成)
- ⑥ 環境被害補償制度의 定立(具然昌)

(2) 學會誌의 發刊

1978 年度의 事業結果를 수록한 本學會의 學會誌 「環境法研究」가 1979 年 3 月 5 日字로 發刊되었다. 그 内容은 다음과 같았다.

- ① 創刊辭(李尚圭)
- ② 環境法의 生成斗 法院의 進路(宋相現)
- ③ 環境污染의 總量規制(金政炫)
- ④ 環境影響評價制度(鄭萬朝)
- ⑤ 環境污染에 의한 公害의 刑事的 規制(金鍾源)
- ⑥ 公害被害에 대한 提訴前의 行政上救濟(李勇雨)

- ⑦ 環境汚染과 行政救濟(金南辰)
- ⑧ 公害의 私法의 救濟의 方向과 相關關係法의 構成(金基洙)
- ⑨ 資料：新判例紹介(鎮海化學事件)
- ⑩ 環境法關係文獻紹介(1)(具然昌)
- ⑪ 學界回顧(李均成)

環境法研究 創刊號는 三英社(代表 : 高德煥)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수고를 맡아 주었다. 出刊後 同會誌는 全會員,各大學校 中央圖書館, 環境關係機關 및 專門家 등에 配布하였으며, 一般人의 購讀을 위하여 市內의 鐘路書館과 中央圖書展示館에 備置해 두었다.

(3) 研究發表會의 開催

① 第1回 研究發表會

- (ㄱ) 日時 : 1979년 4월 21일 오후 4시~7시 30분
- (ㄴ) 場所 : 스칸디나비안 클럽
- (ㄷ) 主題 :
 - i) 日照權侵害의 私法의 救濟의 法理에 관한 研究(全昌祚 : 研究報告〈東亞大 韓國公害問題研究所〉第2卷 第1號<1978.5>掲載)
 - ii) 立證責任分配에 있어서의 危險領域理論(康鳳洙 : 司法行政 1979年 2月~4月號 掲載)

② 第2回 研究發表會

- (ㄱ) 日時 : 1979년 6월 23일 오후 3시~6시
- (ㄴ) 場所 : 出版文化會館(중앙청 동편)
- (ㄷ) 主題 : 環境關係機構
 - i) 環境行政機構(權泰俊 : 環境法研究 第2卷에 掲載)
討論 : 朴魯敬, 徐元宇, 尹明照
 - ii) 環境審判機構(朴銑忻)
討論 : 李尚圭, 梁承斗, 李勇雨

(4) 1979 年度 심포지움

- ① 日時 : 1979년 12월 15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② 場所 : 慶熙大中央圖書館 3層 세미나室
- ③ 主題 : 環境污染과 被害救濟
- ④ 參席者 : 教授 · 法曹人 등 37명
- ⑤ 發表 및 討論者

(ㄱ) 發表主題

- 1) 行政訴訟과 被害救濟(徐元宇)
 - 2) 民事訴訟과 被害救濟(吳錫洛)
 - 3) 環境紛爭調停制度의 效率化(權龍雨)
 - 4) 公害保險制度의 定立(李均成)
 - 5) 環境被害補償制度의 定立(具然昌)
- (ㄴ) 討論者는 丘秉朔, 許慶, 金元主, 鄭權燮, 金東煥 등
- (ㄷ) 司會는 金燦奎 · 全昌祚
- (主題發表論文은 環境法研究 第2卷에 掲載됨)

(5) 定期總會의 開催

- ① 日時 : 1979년 12월 15일 오후 4시 ~ 5시
- ② 장소 : 慶熙大中央圖書館 3層 세미나室
- ③ 會議進行 및 決定事項
 - (ㄱ) 事業報告(徐元宇)
 - (ㄴ) 監查報告(全昌祚)
 - (ㄷ) 任員改選 : 參席會員全員一致로 現任員의 留任을 決議함.
 - (ㄹ) 1980 年度 事業計劃 : 常任理事陣에 一任키로 함.

V. 1980 年의 學會活動

本 學會에서는 創立時부터 다짐하였던 보다 적극적인 學會活動을 전

개하기 위하여 新年初에 1980 年度의 事業計劃을 수립하였다. 적극적인 學會活動을 위하여 불가결한 事業基金의 확보를 위해 會長을 비롯한 常任理事陣이 노력한 결과, 文教部의 1980 年度 政策課題研究助成費 및 學會誌發刊補助費를 수령하게 되었다.

1980 年度는 여러 가지 어려운 國內事情으로 인하여 例年에 비하여 보다 積極的으로 學會活動을 할 수 없었다. 그런대로 1980 年度에 이룩한 學會活動을 간추려 보면,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學會誌인 「環境法研究」 第 2 卷의 發刊, '80 年度 定期 심포지움의 開催, 學會基金의 助成이 그 주된 것이 된다. 그리고 事業計劃의 樹立 및 推進을 위한 다섯 차례의 常任理事會가 있었다.

(1)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本 學會는 韓國環境法學의 發展 및 環境行政의 確立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해마다 重點의인 研究分野를 달리해 왔다. 1980 年度에는 「環境規制手段의 比較法의 研究」를 그 主題로 확정하여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를 受領하였다. 이 主題下에 다음과 같은 小課題로 나누어 그 研究擔當者를 선정하였다.

- ① 環境規制行政(李尙圭)
- ② 環境基準의 比較法의 考察(許慶)
- ③ 環境汚染과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考察(梁承斗)
- ④ 喫煙規制의 法理(金元主)
- ⑤ 環境汚染에 대한 行政의 規制(朴秀赫)
- ⑥ 環境訴訟에 있어서 訴訟救助(金洪奎)

(2) 學會誌의 發刊

1979 年度의 本 學會 研究事業의 結果를 수록한 本 學會의 學會誌 「環境法研究」 第 2 卷이 1980 年 5 月 10 日字로 三英社를 통하여 出刊되었다. 그 内容은 다음과 같았다.

- ① 環境行政訴訟의 諸問題(徐元宇)
- ② 公害訴訟의 節次的 課題(吳錫洛)
- ③ 環境紛爭調停制度의 效率化(權龍雨)
- ④ 公害의 被害者救濟와 保險(李均成)
- ⑤ 環境污染被害救濟制度의 確立(具然昌)
- ⑥ 環境行政機構의 組織原則(權泰俊)
- ⑦ 判例評釋：私生活의 隱密性侵害을 理由로 建築工事의 一部中止를 命한 事例(全昌祚)
- ⑧ 資料：環境保全法(1979 年改正法)
- ⑨ 學界回顧(具然昌)

(3) 1980 年度 定期 심포지움의 開催

1980 年度에는 國內事情으로 인하여 研究發表會를 전혀 가지지 못하였고, 다만 定期심포지움이 몇 번이나 延期되다가 12 月 17 日에야 겨우 開催할 수 있었다. 1980 年度의 本 學會 단 한번의 모임이었으나, 大量의 會員이 参加하여 7 시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热烈討論을 한 점은 특기할만 했다. 그리고 朴準翼 環境廳長을 비롯하여 大量의 環境廳의 關係 公務員과 專門家들이 参加하여 깊은 關心을 보여 주었다.

1980 年度 定期 심포지움의 進行內容은 다음과 같았다.

- ① 日時：1980 年 12 월 17 일(水) 오전 10 시～오후 5 시 30 분
- ② 場所：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세미나室
- ③ 主題：環境污染과 環境規制
- ④ 參加者：本 學會 會員教授·公務員 등 34 인
- ⑤ 심포지움 進行 프로그램：
 - (가) 開會辭(李尚圭 會長)
 - (나) 祝辭(朴準翼 環境廳長)
 - (다) 第 1 部(司會：金燦奎)
 - (i) 環境規制行政(李尚圭)

- (ii) 噸煙規制의 法理(金元主)
- (iii) 環境基準(許慶)
- (다) 第 2 部(司會 : 金鍾源)
 - (i) 環境權(金哲洙)
 - (ii) 土地利用規制(梁承斗)
 - (iii) 環境訴訟과 訴訟救助(金洪奎)

(4) 學會基金의 助成

學會活動의 적극화 내지 활성화는 學會基金의 確保如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우리나라 學會의 피할 수 없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學會는 創立當初부터 다짐했던 學會活動의 組織化·積極化·活性化를 기하기 위하여 그前提가 됨다고도 할 수 있는 學會活動을 위한 基金助成에 특히 謹心해 왔다. 學會創立 이래 學會의 經濟的 運營原則, 그리고 研究擔當會員들의 篤志에 힘입어 學會基金 積立에 拍車를 加한 결과 學會가 創立된지 불과 3年 남짓만에 1,000萬원의 學會基金을 積立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短期間內의 基金積立은 創立 당초부터 열성적인 努力を 傾注해 온 李尙圭 會長에게 그 공로를 돌려야 할 것 같다.

(5) 會員數의 倍增

學會創立 이래 環境法分野에 진지하고도 열렬한 關心을 가지고 研究를 하고 있는 大學教授, 法曹人, 公務員, 環境專門家들만이 會員으로加入해 왔기 때문에, 本 學會의 會員增加는 다른 學會에 비해 볼 때 비교적 低調한 편이었다. 그러나 創立 이후 3년을 지나면서 처음 會員數의 두倍가 되는 60名線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그간 優良기를 벗어나지 못했었던 우리나라 環境法學이 그만큼 成長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6) 會員의 海外研究活動

다른 해에 비하여 1980 年에는 會員들의 海外 滯在·研究가 부쩍 늘었다고 할 수 있다. 短期的인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1 年 이상을 예정한 會員들이 적지 않다. 徐敏교수가 2月初 2년 계획으로 獨逸로, 金南辰 교수가 8月 1년 계획으로 Freiburg 大學으로, 朴秀赫 教수가 2년 계획으로 Bochum 大學으로, 徐元宇 教수가 1년 계획으로 12月初 Stanford 大學으로, 環境廳의 李京浩 書記官이 2년 계획으로 12月末 Montana 大學으로, 그리고 1981년 1月初 具然昌 教수가 2년 계획으로 Wisconsin 州立大로 각각 떠났다. 이들의 長期間의 海外研究가 本 學會의 研究事業은 물론 우리 나라 環境法學의 發展에 기여하게 될 것이 기대되었다.

VI. 1981 年의 學會活動

本 學會는 創立時부터 다짐하였던대로 우리 나라 環境法學界의 發展을 위하여 적극적인 學會活動을 展開하기로 하고 1981 年度의 事業計劃을 樹立하였다. 이에 필요한 事業基金으로, 文教部로부터 1981 年도의 政策課題研究助成費 및 學會誌發刊補助費를 受領하였다.

1981 年度에는 例年の 量的인 學會活動보다 質的인 學會活動으로 엄춘 결과가 되었다. 1981 年度에 이룩한 學會活動을 간추려 보면,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本 學會誌인 「環境法研究」第 3 卷의 發刊, '81 年度 定期심포지움의 開催가 그 主된 것이 된다. 그리고 事業計劃의 樹立 및 推進을 위한 몇 차례의 常任理事會가 있었다.

(1)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本 學會는 韓國環境法學의 發展 및 合理的인 環境政策의 決定과 環境行政의 確立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해마다 重點的인 研究分野를 달리해 왔다. 1981 年度에는 「環境關係法令의 整備를 위한 綜合的·比較法的研究」를 그 主題로 確定하여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를 受領하였

다. 이 주제의 研究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小課題로 나누어 그 研究擔當者를 선정하였다.

- ① 大氣保全法制(鄭權燮)
- ② 驚音·振動 및 日照保護規制法制(全昌祚)
- ③ 水質·土壤保全法制(金鐵容)
- ④ 廢棄物規制의 改善方案(安基熙)
- ⑤ 海洋環境保全法制(李均成)

(2) 學會誌發刊

1980 年度의 本 學會 研究事業의 결과를 수록한 本 學會의 學會誌「環境法研究」第 3 卷이 1981 年 7 月 3 日字로 出刊되었다. 그 内容은 다음과 같았다.

- ① 環境權(金哲洙)
- ② 環境規制行政(李尚圭)
- ③ 環境污染에 대한 行政的 規制(朴秀赫)
- ④ 環境污染과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考察(梁承斗)
- ⑤ 環境基準의 比較法의 考察(許慶)
- ⑥ 噴煙規制의 法理(金元主)
- ⑦ 公害訴訟에 있어서 訴訟救助(金洪奎)
- ⑧ 判例評釋: 우리 나라의 公害判決(具然昌)
- ⑨ 學界回顧(李均成)

(3) 1981년도 定期심포지움의 開催

1981 年度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研究發表會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定期 심포지움이 11 月 13 日 늦게나마 開催할 수 있었다.

本 學會의 심포지움은 지난 해까지는 주로 大學에서 가졌으나, 環境問題가 주로 企業活動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점과 產學協同의 精神에 입각하여, 環境保全協會의 後援으로 大韓工商會議所 大會議室에서 開催함

으로써, 本 學會 會員은 물론 뜻깊은 企業人과 環境關係從事員들이 대거 참석하여 7시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열띤 討論을 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環境問題의 複雜性과 廣域性에 비추어 環境法의 用語조차 생소한 現實을 감안하여, 環境關係法의 改正을 앞두고 環境保全의 基本精神에 알맞는 綜合的인 法整備와 體系化가 時急한 現實에서, 本 學會의 定期심포지움은 學界와 企業界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環境保全協會長의 「經濟成長과 環境保全의 適正調和」를 내용으로 하는 祝辭와 國會 保社委員會의 幹事인 李祥義 議員의 「環境政策과 立法方向」의 招請講演의 內容 역시 앞으로의 環境立法은 各部門의 汚染狀況을 綜合的으로 管理하고 이를 다시 體系的으로 專門化하는 方向으로 指向할 것이라고 發表하여, 環境關係專門家와 公務員, 그리고 企業人們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다.

위 1981년도 定期심포지움의 進行內容은 다음과 같았다.

- ① 日時 : 1981. 11. 13(金) 9:30~16:30
- ② 場所 : 大韓工商會議所 大會議室
- ③ 主題 : 現行環境關係法令의 綜合的 研究
- ④ 參席者 : 本 學會會員敎授, 公務員, 企業人 등 120 人
- ⑤ 심포지움 進行 프로그램 :
 - (가) 開會辭(李尚圭 會長)
 - (나) 祝辭(鄭壽昌 環境保全協會 會長)
 - (다) 第 1 部 主題發表
 - (i) 大氣保全法制(鄭權燮)
 - (ii) 驟音·振動 및 日照保護 規制法制(全昌祚)
 - (iii) 水質·土壤保全法制(金鐵容)
 - (라) 第 2 部 主題發表
 - (i) 廢棄物規制法(安基熙)
 - (ii) 海洋保全法制(李均成)

(iii) 環境法制의 運用問題(權肅杓)

(마) 第3部 綜合討論

(i) 大氣部門(車喆煥: 고려대 및 李達雨: 한국코트렐工業(株))

(ii) 驟音·振動部門(車日煥: 연세대)

(iii) 水質·土壤部門(金東汝: 서울시립대)

(iv) 環境紛爭部門(權龍雨)

VII. 1982年의 學會活動

學會의 創設 이래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이었던 學會活動이 1982년에 들어서면서 눈에 띠게 시들해진 느낌을 준다. 1982년에는 會長의 노력에 의한 文教部 政策課題研究費의 受領과 前年度研究事業의 結果인 學會誌의 發刊이 그 活動의 전부였다. 단 1回의 研究發表會도 가지지 못하였던 사실은 여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1)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1982年度의 本學會의 重點的인 研究分野로서, 「排出賦課金制度에 관한 研究」를 主題로 確定하여, 文教部의 政策課題研究助成費를 受領하였다. 이 研究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小課題로 나누어, 그 研究擔當者를 選定하여 研究를 마무리하였다.

- ① 排出賦課金制度의 意義와 比較法의 考察(鄭在吉)
- ② 排出賦課金制度의 運用과 그 問題點(尹瑞成)
- ③ 排出賦課金制度와 類似한 制度(權五乘)

(2) 學會誌 發刊

1981年度의 本 學會 研究事業의 成果를 收錄한 學會誌「環境法研究」第4卷을 1982年 7月 30日字로 出刊하여, 各會員과 關聯 公·私機關과 團體에 頒布하였다. 이 學會誌의 内容은 다음과 같았다.

- ① 大氣保全法(鄭權燮)
- ② 驟音·振動 및 日照保護規制法制(全昌祚)
- ③ 水質·土壤保全法制(金鐵容)
- ④ 廢棄物規制의 改善方案(安基熙)
- ⑤ 海洋環境保全法制(李均成)
- ⑥ 韓國環境影響評價制度에 대한 몇 가지 考察(具然昌)
- ⑦ 資料：1981年 改正 環境保全法
- ⑧ 學會回顧

VIII. 1983年의 學會活動

1982년부터 學會活動의 적극성이 쇠퇴하기 시작했던 餘波는 1983년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創立當時의 熱氣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시들해진 것인지, 아니면 環境廳의 설치와 함께 環境廳의役割이 적극화하게 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環境法研究에 열성적인 人的資源의不足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研究發表한 主題와 發表者를 찾기도 쉽지 않았던 것이當時의 實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3년에는 1회의 研究發表會가 있었을 따름이다. 本 學會의 春季研究發表會에서 다음과 같이 主題別 發表와 會員 간의 討論을 가졌다.

- ① 日時：1983. 4. 30(土) 14:00~18:00
- ② 場所：韓國法學院 會議室
- ③ 主題發表：
 - (가) 環境行政訴訟의 要諦——要件審理와 實體審理의 調和(千柄泰)
 - (나) 海底石油探查와 海洋環境保全(李相敦)

IX. 1984 年의 學會活動

1984 年의 定期總會에서는 學會의 創立에서부터 그 基盤造成에 先導的 役割을 맡으시고 學會를 이끌어 오셨던 李尙圭 會長이 너무 長期間 동안 會長職을 맡으셨다고 會長職을 固辭하여 6 年 半만에 後任會長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學會가 學會다운 位相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모두 李會長의 공로로 들려 마땅할 것 같다.

1984 年에는 大學의 自律化라는 정부의 정책전환과 함께 大學街는 각 종의 騷擾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고, 會員의 대부분이 大學에 재직하는 本 學會는 자연히 그 活動에 적잖은 장애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回의 研究發表會와 學會誌를 발간할 수 있었다.

1982 年부터 2~3 年간의 學會의 活動經驗에서 얻은 교훈은 學會를 움직이는 전인차적 역할을 하는 人的 要員이 불가결하다는 점이었다. 1984 年의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學會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學會가 전문성과 열성을 가진 幹事인 李相敦 교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1) 1984 年度 總會 및 研究發表會 개회

- ① 日時 : 1984. 7. 21. 18:00~21:00
- ② 場所 : 스칸디나비안 클럽
- ③ 總會의 決議事項

(i) 會則改正 : 常任理事를 6 人으로 하고, 任員의 任期는 2 年으로 하며, 常任理事會의 決議는 구성원의 過半數의 찬성으로 하기로 會則을 改正함.

(ii) 任員改選 : 新任會長에 徐元宇 교수(서울大), 副會長에 全昌祚 교수(東亞大)와 金伊烈 교수(中央大)가 선출되었다. 이번 會長團의 선출과 관련하여 하나의 慣例를 설정하였는바, 그것은 이후에는 第 1 副會

長이 會長으로 第2副會長이 第1副會長을 승계하고 第2副會長만 선출한다는 것이다.

한편, 常任理事로는 李尚圭 廷호사, 金哲洙 教수(서울大), 吳錫洛 廷호사, 具然昌 教수(慶熙大), 金亨澈 環境廳計劃調整局長, 李均成 教수(外國語大)가 선임되었으며, 監事에는 金基洙 教수(漢陽大)와 金元圭 教수(慶北大)가, 그리고 幹事에는 李相敦 教수(中央大)가 각각 선임되었다.

④ 研究發表會 主題

- (i) 美國 國家環境政策法의 시행과 法院의 役割(具然昌)
- (ii) 排出賦課金制度의 運用과 그 問題點(尹瑞成)

(2) 1984 年度 秋季 研究發表會

- ① 日時: 1984. 12. 1. 15:00 ~ : 18:00

- ② 場所: 韓國社會科學圖書館 세미나실

③ 研究發表會 主題

- (i) 環境問題의 制度的 接近方法(申鉉德)
- (ii) 獨逸의 環境保全法制(朴秀赫)

(3) 環境法研究 第5卷 發刊

本 學會는 1983. 12. 20 字로 環境法研究 第5卷을 發刊하였다. 第5卷에는 特집으로 排出賦課金制度에 관한 論文 3편을 포함한 다음의 論文이 게재되어 있다.

- ① 排出賦課金制度의 意義와 比較法의 考察(鄭在吉)
- ② 排出賦課金制度의 運用과 그 問題點(尹瑞成)
- ③ 排出賦課金制度와 類似한 制度(權五乘)
- ④ 海底石油開發 過程에서 발생하는 海洋污染의 法의 問題點(李相敦)

(4) 會員들의 1984 年度의 研究活動

1984 年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會員들의 研究活動이 활발한 편이었는데,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Yeon-chang Koo,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A Critical Evaluation of Its Legislative Scheme,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Ph.D.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Madison, 1984).
- ② 具然昌, 「判例研究 : 公害訴訟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와 蓋然性立證」(大判 1984. 6. 12, 1981 다 558), 大韓辯護士協會誌 1984 年 10 月號
- ③ 徐元宇, 環境權의 性質과 效力(서울大 法學 25권 1호, 1984)
- ④ 申鉉德, 海洋污染防止에 관한 國際條約과 國內法, 國際法學會 論叢, 제 28 권.
- ⑤ 李相敦, 海洋環境法 序說——海洋污染의 現況과 問題點(中央大 論文集 사회과학편 제 28 집, 1984)
- ⑥ 李相敦, 海洋投棄에 의한 海洋污染의 法的 規制(中央大 法學論文集 제 9 집, 1984)
- ⑦ 李相敦, 油類에 의한 汚染被害을 填補하기 위한 美國의 法制(海法會誌 제 6 권, 1984)
- ⑧ Sang Don Lee, Marine Environment Law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11(1984)
- ⑨ 李相敦, 海洋污染의 規制를 위한 現行國內法의 諸問題點(法曹 제 33 권 4~5 호 1984. 4~5)
- ⑩ 李英峻, 海洋污染防止를 위한 地域的 協力 모델로서의 Baltic 協約에 관한 考察, 國際法學會 論叢, 제 26 권 2 호
- ⑪ 韓昌奎, 美國의 環境訴訟法制 概觀(成大 社會科學 제 20 집, 1983)

X. 1985 年의 學會活動

1984 年 이래 우리 學會는 그 活動의 原動力이 되는 學會運營資金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學會의 적극적인 活動이 또 하나의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 긴축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1985 年에는 예년보다도 더욱 활발한 學會活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會員들의 열성과 봉사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985 年에는 세차례의 研究發表會와 學會誌의 發刊이 있었다.

(1) 春季研究發表會

- ① 日時 : 1985. 3. 30. 14:00~17:00
- ② 場所 : 環境廳 會議室
- ③ 主題 및 發表者

日本에 있어서의 環境法의 最近動向 : 編貫芳源 教授(日本 獨協大學)

(2) 夏季研究發表會

- ① 日時 : 1985. 7. 13. 16:00~19:00
- ② 場所 : 스칸디나비안 클럽
- ③ 主題 및 發表者
 - (i) 獨逸 刑法上의 環境犯罪 : 金鍾源 教授(成均館大)
 - (ii) 環境經濟學과 環境法 : 金仁煥 박사(環境廳)

(3) 冬季研究發表會

- ① 日時 : 1985. 12. 21. 13:30~17:00
- ② 場所 : 스칸디나비안 클럽
- ③ 主題 및 發表者

- (i) 地下水污染의 防止를 위한 法的 對策 : 具然昌 教수(慶熙大)
- (ii) 環境紛爭調停制度 : 崔松和 教수(서울大)

(4) 「環境法研究」第6卷 發刊

1984. 12. 27 字로 발간된 本學會의 學會誌「環境法研究」第6卷에는 다음의 論文 4篇을 수록하고 있다.

- ① 環境問題의 制度的 接近方法(申鉉德)
- ② 美國 國家環境政策法(NEPA)의 施行과 法院의 役割(具然昌)
- ③ 西도이칠란트의 環境法體系와 그 特色(朴秀赫)
- ④ 核에너지開發의 法的 問題點(李相敦)

(5) T. Schoenbaum 교수와의 간담회

1985년 12월초에 美國의 대표적인 環境法 교과서 중의 하나인 *Environmental Policy Law* (Foundation Press, Revised Ed. 1985)의 著者인 Thomas J. Schoenbaum 교수(Georgia大學校)가 잠시 訪韓하였으나 學會의 公式的 會合은 갖지 못하였고 몇몇 會員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美國의 環境法學界의 動向에 광하여 토의하는 간담회 모임을 갖은 바 있다.

XI. 1986年의 學會活動

1986年에는 2回의 세미나를 가졌고, 定期總會에서의 任員改選이 있어 第1副會長이었던 全昌祚 教수(釜山外國語大)가 會長을 승계하였다. 學會發展에 큰 공로를 기리는 뜻에서 李尙圭 前會長을 名譽會長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例年과 같이 學會誌가 발간되었음을 물론이다.

(1) 夏季세미나

- ① 日時 : 1986. 9. 4. 18:00~20:00

② 場所：스칸디나비안 클럽

③ 主題 및 發表者

美國에서의 環境法의 最近動向：James B. MacDonald 教授(미국
위스칸신 Law School)

(2) 1986 年度 總會 및 秋季세미나

① 日時：1986. 11. 1. 14 : 00 ~ 20 : 00

② 場所：스칸디나비안 클럽

③ 定期總會

(i) 會則改正：名譽會長과 特別會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常任理事의 수를 '10人 이내'로 확충시킴。

(ii) 任員改選：名譽會長에 李尙圭 前會長이 추대되었으며, 新任會長에는 全昌祚 教授(釜山外國語大), 副會長에는 金伊烈 教授(中央大)와 吳錫洛 律師가 각각 선임되었다. 또한 常任理事에는 具然昌 教授, 金基洙 教授, 金南辰 教授, 金元主 教授, 金鐵容 教授, 金亨徹 國長, 梁承斗 教授, 李均成 教授, 鄭萬朝 판사 및 鄭照根 教授가 선임되었으며, 監事에는 朴銑忻 律師처장과 吳世卓 教수가 선임되었으며, 幹事에는 李相教 教수가 留任되었다.

④ 세미나 主題 및 發表者

(i) 1986 年 環境立法의 動向：金亨徹, 金基洙, 金南辰 (環境廳)

(ii) 日本의 環境法의 性格：芝池義一 教授(日本京都大學)

(3) 「環境法研究」 제 7 권 발간

1986 年 10 월 26 일자로 발간된 本 學會의 學會誌 「環境法研究」 제 7 권에는 다음의 論文 4 편과 文獻紹介 1 편이 실려 있다.

① 環境管理制度에 관한 經濟學的 接近(金仁煥)

② 環境紛爭調停制度의 개발에 관한 研究(徐元宇, 崔松和)

③ 地下水污染의 防止對策(具然昌, 元學喜, 權五乘)

- ④ 日本에 있어서의 環境法의 最近動向(綿貫芳源)
- ⑤ 環境問題의 制度的 接近에 관한 文獻(申鉉德)

(4) 松軒 安二瀧博士 華甲記念論文集 發刊에의 寄稿

우리 나라 民法學界의 泰斗이 실 뿐더러 實제의 公害事件에의 參여와 “公害에 대한 私法的 考察”이란 博士學位論文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環境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바 있는 松軒 安二瀧博士님의 華甲을 기념하는 論文集인 「民事法과 環境法의 諸問題」가 1986년 5월 10일자로 발간되었다(博英社 刊). 同書에는 다음과 같은 11편의 環境法論文이 수록되어 있는 바, 그 중 10편이 우리 學會會員의 寄稿이다.

- ① 公害와 因果關係에 관한 判例의 動向(具然昌)
- ② 共同不法行爲論에 있어서 公害에 대한 小考(林正平)
- ③ 石綿에 의한 被害와 관련된 法的 問題點(李相教)
- ④ 環境行政과 第3者 保護(金南辰)
- ⑤ 土地利用과 環境保全(鄭權燮)
- ⑥ 廢棄物法制에 관한 研究(安基熙)
- ⑦ 危險領域理論과 環境訴訟의 적용(全昌祚)
- ⑧ 美國 環境行政訴訟에 있어서의 ‘Standing’ 法理의 展開(千柄泰)
- ⑨ 公害賠償訴訟에 있어서의 包括請求의 意義(吳錫洛)
- ⑩ UN 海洋法協約과 海洋汚染防止法(金燦奎)
- ⑪ 新海洋秩序와 國內立法上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考察(李英峻)

XII. 1987年의 學會活動

어려운 條件下에서도 우리 學會는 점차 정상적인 軌道로 進入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1987년은 우리 學會가 創立된지 10周年이 되는 해이다. 욕심같아서는 큼직한 國際 심포지움을 열고 싶었으나 조출하고 알찬 축하와 세미나를 가졌다.

1987 年에는 2 회의 研究發表會 외 創立 10 周年 學術세미나 그리고 學會誌 제 8 권의 發刊이 있었다.

(1) 第 1 回 研究發表會

- ① 日時 : 1987 年 2 월 28 일 15:00~20:00
- ② 場所 : 스칸디나비안 클럽
- ③ 主題 및 發表者
 - (i) 共有水資源의 보존과 관리(李相敦)
 - (ii) 複數原因者の 公害賠償責任(韓相元)

(2) 第 2 回 研究發表會

- ① 日時 : 1987 年 6 月 20 日 15:00~20:00
- ② 場所 : 스칸디나비안 클럽
- ③ 主題 및 發表者
 - (i) 環境規制의 政策的 側面(申鉉德)
 - (ii) 環境政策形成에 관한 意識調査(安基熙)

(3) 學會創立 10 周年記念 學術세미나

- ① 日時 : 1987 年 11 月 28 日
- ② 場所 : 大韓商工會議所 商議클럽
- ③ 主題 : 韓國環境法의 現況과 展望
- ④ 記念式進行
 - (i) 會長人事(全昌祚)
 - (ii) 感謝碑 증정
李尚圭 명예회장, 高德煥 三英社 代表
 - (iii) 記念辭(李尚圭)
- ⑤ 세미나 進行
 - (i) 韓國環境法의 再照明(具然昌)

司會：金伊烈

討論：金亨徹(환경청 대기보전국장)

(ii) 環境影響評價制度(金元主)

司會：金南辰

討論：金榮和(환경청 환경평가과장)

(iii) 排出賦課金制度(李善龍：環境廳)

司會：金南辰

討論：安基熙(환경보전협회 개발부장)

(iv) 종합토론

(4) 環境法研究 第8卷 發刊

環境法研究 제8권(1986)이 1987년 2월에 出刊되었는 바, 여기에는 3편의 論文이 수록되어 있다.

① 環境規制의 政策的인 側面(申鉉德)

② 美國과 베시코의 國境地域의 環境問題(李相敦)

③ 環境法의 性格(芝池義一)

이와 아울러 1986년 12월 改正 및 制定된 環境保全法, 海洋污染防止法 및 廢棄物管理法이 수록되어 있다.